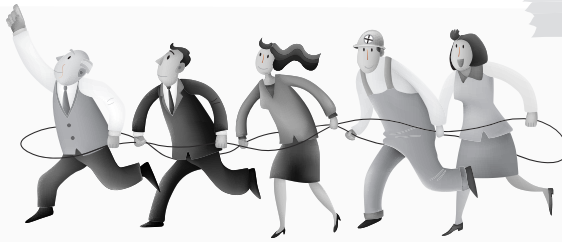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 · 발표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제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제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 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 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 ·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08.9.25)한다.
-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여 동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촉진하였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 제도 개선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확대, 공제등록금액의 결정 및 회비부과방식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제등록금액(보상한도액) 책정기준의 개선

현재 건물의 경우 종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청사 등), 구조별(철근·철골콘크리트조, 연와조·석조·벽돌조, 기타)로 책정된 등록기준액에 건물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등록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등록물건의 재조달가액 이하로 회원이 신청한 금액을 공제등록금액으로 한다.

❖ 테러위험 담보에 따른 손해보상 기준 신설

테러행위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5천만원), 최고보상한도액(50억원) 등 공제금 지급기준을 신설 한다.

기준 신설은 테러로 인한 물적 손해를 기본보상손해에 추가함에 따라 테러손해에 대한 공제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 특별담보로 보상하는 손해의 신설

현재 회원이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인 화재로 인한 신체배상손해 외에 전기위험손해, 구내폭발손해, 스프링클러손해, 소요·노동쟁의손해, 기계위험손해, 기타손해(종합공제)를 추가 한다.

한편 재해복구공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klfa.or.kr> (공제사업 규정 및 서식)에서 다루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27
Fax. 02)3274-2009
E-mail, dm9866@hanmail.net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08년 9월호
(통권 제 9 호)

발행인 김 국 현

편집인 이 삼 겔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김 공 박 | 도시행정발전연구소 소장
김 흥 래 | 전 행정자치부 차관
김 현 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노 영 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완 규 | 중앙대학교 교수
배 득 중 | 연세대학교 교수
손 희 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 경 봉 | 국민대학교 교수
원 윤 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윤 석 완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이 삼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 성 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 가나다순)
김 현 기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박 재 민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 장 회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변 성 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강 민 구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이 용 철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08년 9월 30일

디자인·인쇄 금강인쇄정보